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추천절차 추가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5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535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추천절차 추가 등(안 제2조 등)	2

I.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535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8.

다. 회 부 일 : 2025. 1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각 지자체 및 특구를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새만금 사업지역도 이에 발맞춰 ‘균형성장 거점으로서의 새만금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과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고, 타 법령의 준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3. 검토의견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추천절차 추가 등(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제61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 ⑨ (생략)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새만금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운영, 지원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10호),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면서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추가하며(안 제61조제1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의 준용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의 지원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현행법 제61조¹⁾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²⁾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⑤ ~ ⑨ (생략)

2)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교육기관법」을 준용함(제4항).

그런데,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3)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추천권자(행정기구의 장)의 추천을 받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제15조4)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교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육기관에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재정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업무 또는 회계 보고, 예산의 변경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외국교육기관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추천권자 및 지원에 따른 조치가 규정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할 것임.

다만, 정의규정에는 동어반복적, 순환적 표현을 지양할 필요⁵⁾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외국교육기관” 정의는 유사 입법례⁶⁾를 고려하여 문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성고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248 참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추천권자 규정 미비를 보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 승인 절차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국교육기관법」상의 지
원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9